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 정춘숙·송옥주·이용빈

권인숙 • 유동수 • 김병욱

김윤덕 • 박용진 • 이성만

강훈식 · 이용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 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 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 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가정폭력의 정의규정에 '성적 폭력'을 추가하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추가하며,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등의 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변경하며, 피해자의 정의규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
- 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변경하고,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폐지함(안 제2장, 제2장제3절 삭제).
 -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안 제5조).
 -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 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이를 지 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 3)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사법경찰관이 피

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해 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6조).

- 4)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33조).
- 5)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유예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삭제 및 제11조 신설).
- 6)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및 통역, 영상물의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 라.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가정법원 관할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정폭력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0조 삭제, 제13조신설 및 제39조).
- 마. 피해자보호명령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 사 제한 등의 종류를 추가함(안 제40조).
- 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 조제8항 및 제41조제1항).

- 사.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45조).
- 아. 벌칙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보호조치·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죄를 신설함(안 제53조 및 제55조).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적, 정신적"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를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정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죄에만 해당한다"를 "죄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를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미수범)"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 중 "죄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마.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6.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4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단서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가정보호사건"을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 및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거 또는 건조물의 내부로 진입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가해자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3. 제6조(긴급보호조치), 제23조(임시조치) 및 제40조(피해자보호명 령) 등의 피해자 보호규정 및 절차진행에 대한 고지
- ③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에는 해당 가정에 대한 현장출동기록, 선제폭력상황, 피해상황, 폭력의 지속성, 사건개요 및 폭력양상, 거주환경 및 알콜·도박중독 등 가정폭력가해자·피해자 성행, 그 밖의 피해자의 존재, 폭력재발위험징후, 안전조치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제40조(피해자보호명령)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 죄사실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는 긴 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

- 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의 긴급보호조치 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위급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보호조치위반자를 즉각 유치하고, 그 사실을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며,제23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긴급보호조치의 기간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개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가 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가해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가해자 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사기간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2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에 수사

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각 유치하고,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3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가정폭력가해자 자 성행(학대피해 여부, 알콜 등 중독 및 성격장애 여부 포함), 그밖의 피해자의 존재 등을 조사하고, 폭력 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임시조치 청구 및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한다.
- ③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시 피해자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험예방계획을 세우고,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금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가정폭력범죄 를 범한 경우
 - 2. 이 법에 의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가정폭력범 죄를 범한 경우
 -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함에 있어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4.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 6. 긴급보호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 제12조(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 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 제13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정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①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 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한다.
- 1. 성평등과 인권교육
- 2. 그 밖에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⑧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5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 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16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 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다.
- 제17조(수사절차에서의 통역 등) ①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때에는 수화, 통역, 번역 등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수화, 통역, 번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 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

- 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2절 조사·심리"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조사·심리 및 그 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그 관여자 및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

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 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가해 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1조 앞에 "제2절 조사·심리"를 신설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가정상황, 가정폭력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회복지학자"를 "사회복지학자, 여성학자"로, "가정 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보호 사건을"을 "가정폭력범죄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가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 폭력가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과할 사항 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 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⑦ 가정폭력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3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 을 고지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

- 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가 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요지 및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가해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의 보호나 심신의 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29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는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④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 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 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사와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 제31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우자·직

- 계친족·형제자매·동거친족,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협조·원조) 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야 한다.
- 제33조(재판 기간)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 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4조 앞에 "제3절 항고와 재항고"를 신설한다.
-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4조(항고) ① 제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가해자, 법정대리인또는 변호사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임시조치를 기각한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 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5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제36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 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37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8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39조 앞에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설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심리와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0조 앞의 "제3절 보호처분"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 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5.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6.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민등록열람 제한
 - 7. 괴롭힘 금지
 - 8.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및 양도의

금지(피해자가 별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9. 피해자에게 거처양도(피해자가 별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가정폭력가해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법원이 제1항제8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때에는 처분과 양도가 금지되는 재산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⑧ 법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청구에 따른 경우는 2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41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0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2조(이행실태의 조사 등)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그 사실을 관할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44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4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폭력가해자, 법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변호사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 다.
 - ③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④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생활비지급 등의 결정) ① 판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 다.

- ②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46조(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 앞에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
-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7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이 계속(繁屬)된 제1심 법원에 제48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2.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②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사건에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49조 앞의 "제4절 항고와 재항고"를 삭제한다.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9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 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가 해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제50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 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

- 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5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53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신설한다.
-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조(긴급보호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불이행죄)
 - ① 제6조에 따른 긴급보호조치, 제23조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4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가 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19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9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앞의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을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과태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앞의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4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가 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정보호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진행 중인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또는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피해"로 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2 전단,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각각 "가정폭력가해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 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 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적으로 한다.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1.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정신적·성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3.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나.(생 략)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 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 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 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 체포, 특수감금), <u>제279조</u> (상습범) 및 제280조(미수 벌)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 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 84조(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제283조의 <u>죄에</u>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 (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 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 조(강간), 제297조의2(유사 강간), 제298조(강제추행),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279조
(상습범)(제276조, 제277조
의 죄에 한정한다) 및 제2
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까지의 죄에 한정
<u>한다)</u>
라
한정한다
마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 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 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생략)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 거침입의 죄 중 <u>제321조</u> (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 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 의5(미수범)(제324조의 <u>죄</u> <u>에만 해당한다</u>)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 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 조(공갈), 제350조의2(특수

<u>한정한다</u>
바. (현행과 같음)
ላ ት
•
<u>제319조</u>
<u>제319조</u>
<u>제319조</u>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u>제319조</u>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
<u>제319조</u>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 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 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미수범)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 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미수범)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 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 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미수범)

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 카. (생 략)

-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 4. 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등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 은 사람을 말한다.
-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 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 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 7.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 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 다.
-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 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 한다.
-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삭 제〉

죄에 한정한다	
차.ㆍ카. (현행과 같음)	
4 <u>가정폭력가해자</u>	
5	
<u>피</u> 해	

- 6.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40 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 한다.

<삭 제>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u>「아동학대범</u> <u>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 |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 및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 이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 | 장에 출동하여 주거 또는 건조한다. | 물의 내부로 진입하여 폭력행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 죄수사
-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

 당한다)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세3소(나는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장 <u>가정폭력범죄 형사처리에</u>
관한 특례

에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체포 및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 장에 출동하여 주거 또는 건조 물의 내부로 진입하여 폭력행 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가해자 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정 폭력범죄에 대해 즉시 수사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현장 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

- 의료기관으로 인도
-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 있음을 통보
-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1.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
 - 2.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3. 제6조(긴급보호조치). 제23조 (임시조치) 및 제40조(피해자 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규정 및 절차진행에 대한 고 ス
 - ③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 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 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에는 해 당 가정에 대한 현장출동기록, 선제폭력상황, 피해상황, 폭력 의 지속성, 사건개요 및 폭력양 상, 거주환경 및 알콜·도박 중 독 등 가정폭력가해자·피해자 성행, 그 밖의 피해자의 존재, 폭력재발위험징후, 안전조치 여 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 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 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 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 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 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재6조(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 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제40조(피해자보호명령)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긴급보호조치결 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 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보호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청구는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하여 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긴급보 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④ 사법경찰관의 긴급보호조치 또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위 급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 보호조치위반자를 즉각 유치하 고, 그 사실을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며, 제23조제1 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⑤ 긴급보호조치의 기간은 임 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개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 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 력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 력가해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7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 제8조(수사기간의 특례) ① 사법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 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 력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 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 히 수사하여 20일 이내에 사건 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사건 을 송치받은 검사는 30일 이내 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즉시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

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 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 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 <삭 제> 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 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 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 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 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 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를 취소하여야 한다. <삭 제>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제9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 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 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 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를 철회한 경우

- 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 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 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 23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 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각 유치하고,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에 제23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 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 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의 제10조(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 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한다.

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 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 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위험평 가조사서를 지체 없이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 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동 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가 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가정폭력가해자 성행(학대 피해 여부, 알콜 등 중독 및 성 격장애 여부 포함), 그 밖의 피 해자의 존재 등을 조사하고, 폭 력 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임시조치 청구 및 공소제기 여 부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수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 제11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금지)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 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 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 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 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 에 송치할 수 있다.

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사 시 피해자보호 및 재발방지 를 위하여 위험예방계획을 세 우고,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를 최대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u>3년 이내에 가정폭</u> 력범죄를 범한 경우
- 2. 이 법에 의한 피해자보호명 령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가 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3. 가정폭력범죄를 범함에 있어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 4.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5.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사건 인 경우
- 6. 긴급보호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 제12조(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 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전담 검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 시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 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 로 하여금 가정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 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 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 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 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임시조<u>치 등의 이행실태</u> 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처리) ① 제11조제1항 또는 | 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 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 제13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

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 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 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10 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 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 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 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 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 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 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 다.

제14조(송치서) ① 제11조 및 제1 제14조(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 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

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 으면 가정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를 지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과) ①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치서를 보내야 한다.

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 수 있다. 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 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 여야 한다.

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 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 | 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 ②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 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 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 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 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 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 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 장애인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 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 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

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내용으로 한다.
- 1. 성평등과 인권교육
- 2. 그 밖에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 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

제15조(이송) ① 가정보호사건을 제15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 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 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 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을 준용한다.

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 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 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 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 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 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 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 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 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6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소송관계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 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 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 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17조(수사절차에서의 통역 등)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 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 이 확정된 때
-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 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 조에 따라 송치된 때
-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정폭 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 ①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정폭 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견 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피해 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 는 때에는 수화, 통역, 번역 등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수화, 통역, 번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제18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 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 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 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 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 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 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 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 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 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 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 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 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 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 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 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

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 (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 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 <삭 제> 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 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 법」을 준용한다.

제2절 조사·심리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 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 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 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 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 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 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를 준용한다.

<삭 제>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조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심리 및 그 집행에 관한 직 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그 관 여자 및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에 대하여는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 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 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 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 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자가 보 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 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 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①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 ②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을 준용한다.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 사관을 둔다.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ㅣ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제21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 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 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 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 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 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 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 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 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 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 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

제2절 조사・심리

은 가정폭력범죄를 조사・심리 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 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그 밖 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및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가정상황. 가정폭력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1
	/ /	사회복/	 이학
<u>자, 여성학자</u> -			
	뚜럭가	해자	
		·	
2 <u>7</u> }	정폭력	<u>범죄를</u>	

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 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다.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 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 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제23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피해 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 력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 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 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 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가정폭력가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가정폭력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수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

게 가정폭력가해자를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경우에는 부과할 사항을 그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도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이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하여야 한다.
- ⑦ 가정폭력가해자, 그 법정대 리인이나 변호사는 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7 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 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판 제24조(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 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 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 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 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가|제25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 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 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 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 | 제26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 폭력가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 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에 이행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가정구성원 또는 법 정대리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 폭력가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폭력범죄 의 요지 및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 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 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 제27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 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 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 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 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권 또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가해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피해자의 심 신안정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의 보 호나 심신의 안정 및 신변보호 를 위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 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 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제28조(보조인) ① 가정폭력행위 |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 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 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 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 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 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 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동석)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 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 |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 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한 법률 | 을 준용한다.

-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 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소에의 위탁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

- 제29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 판사는 범죄신고자 등 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 일한 효력이 있다.
 - ④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 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 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 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 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 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 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 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 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 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 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 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 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4 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 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국선변 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법원조 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 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 을 준용한다.

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 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 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 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 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 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 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 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 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삭 제>

①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 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 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 야 하다.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 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u>수 있다</u>.

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 제30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사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 수 있다. 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제31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 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 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의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 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 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 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 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서 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 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32조(심리의 비공개) ① 판사는 | 제32조(협조·원조) ① 법원은 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 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 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 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 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할 때에는 가정폭력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 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배 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친 족.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 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정폭력범죄의 조사·심리에 필 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 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 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 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 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 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① 제33조(재판 기간) 가정폭력범죄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 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 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 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 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 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 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 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 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 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 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 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 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 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

제3절 항고와 재항고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 제34조(항고) ① 제9조 또는 제23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 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 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 력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 호사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② 판사가 임시조치를 기각한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 | 사소송법 | 중 비용에 관한 규 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① | 제35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협조와 원조) ① 법원은 제36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 <u>가정보호사건의</u>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 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 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 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 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 에 제출<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 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 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 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 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37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하여야 한다.

-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
-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 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 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 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 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 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에게 송치

-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 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는 효력이 없다.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 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제39조(심리와 결정) 피해자보호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제40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 | 제38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 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 사가 한다. <삭 제>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 신기본법 | 제2조제1호의 전 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 사의 제한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 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보호관찰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5.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 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 (倂科)할 수 있다.

- 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사법 경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 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 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 항
 - 와의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6.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 민등록열람 제한

 - 8. 피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 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및 양도의 금지(피해자가 별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 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 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 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 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 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 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 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 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 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
- 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을 하여야 한다.

- 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에 한 정한다)
- 9. 피해자에게 거처양도(피해자 가 별도로 이를 신청한 경우 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 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 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 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 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 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 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가정폭력가해자를 상대방 당 사자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 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법원이 제1항제8호의 피해 자보호명령을 하는 때에는 처 분과 양도가 금지되는 재산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으며, 부동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 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 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 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 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산의 경우에는 가처분 또는 가 압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⑧ 법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청구에 따른 경우는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한다.

제41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0조제1항 각 호의 피해
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
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
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이행실태의 조사 등)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

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 다.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 제43조(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 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 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 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 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 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 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가 그 결 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 행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 2조를 준용한다.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 제44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0조 원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 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 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 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41 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 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 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 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는 피해자, 가정폭력가해자, 법 정대리인, 사법경찰관 또는 변 호사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 ④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 | 제45조(생활비지급 등의 결정) ①

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 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 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 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 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 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 자가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 |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

판사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 는 직권 또는 피해자 및 그 법 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 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 ②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제46조(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 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 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 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에게 송치
-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 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신 설>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제47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 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 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정폭력범죄의 사건이 계속(繋 屬)된 제1심 법원에 제48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1항제4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 4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 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 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 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 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48조(비용의 부담) ① 제29조제 제48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 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정 폭력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 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 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 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 료비 손해의 배상
- ②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사건에 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 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 다)을 준용한다.

<삭 제>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 제49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 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유죄판 결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 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 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 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 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 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 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 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 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 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제50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 제50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배상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 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아니면 적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 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세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 다.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유 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가정 폭력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 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51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 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 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 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 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 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 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 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 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 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5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 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 📗 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 령이 적혀 있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 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 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 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제53조(긴급보호조치, 임시조치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 는 효력이 없다.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제5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52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 제5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 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 하다.

제5장 벌칙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불 이행죄) ① 제6조에 따른 긴급 보호조치, 제23조에 따른 임시 조치 또는 제40조에 따른 피해 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 지 아니한 가정폭력가해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가해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죄) ① 제19조제1항과 제3항에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보도 금지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 제55조(과태료) 제4조제2항 각 호 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 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 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 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 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 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 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 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 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 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 <삭 제> 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 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 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 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 📗 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삭 제>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 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 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 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 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 다.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 <삭 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 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 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 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 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5조의6(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 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1.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 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 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 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 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 | <삭 제> 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 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 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 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

<삭 제>

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 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9(위임규정)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가 | 제56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 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 |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 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의 1까지 가중한다.

<삭 제>

<삭 제>

정보호사건이 계속(繁屬)된 제1 중처벌) 제40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 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 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57조(배상명령) ① 법원은 제1 <삭 제> 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 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 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 다)을 준용한다.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① 배상 | <삭 제> 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

시에 하여야 한다.

-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 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 결 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 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소 송법 .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 다.
- ⑤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 호처분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신청의 각하) ① 배상신청 │ <삭 제> 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 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 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 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 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불복) ① 보호처분에 대한 | <삭 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 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 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 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 ②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 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

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 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 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 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 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 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 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 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삭 제>

<삭 제>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제1 62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 한다.

제5장 벌칙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삭 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하다.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 위자
-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 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 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삭 제> 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

<삭 제>

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등 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 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 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삭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 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 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 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 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

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 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 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 르지 아니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 <삭 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 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

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